

1. 개정이유

사회·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, 선정방법, 거주기간,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
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수요·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(안 제23조제2항)

○ 인구·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
나.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(안 별표6의4)

○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,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영구임대주택”을 “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”으로, “거처 별도로 정하는”을 “거처”로, “선정방법”을 “선정방법, 거주기간, 임대료 등을 따로 정하고, 이”로 한다.

별표 5의2 제2호나목6)가) 중 “별표 4 제2호바목1)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, 쪽방”을 “쪽방”으로, “사람으”를 “사람 및 별표 4 제2호바목1)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”로 한다.

별표 6의4 제3호나목2)다)를 삭제하고, 같은 2) 가)를 다)로 하며, 같은 2)에 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2) 다)(종전의 가)) 중 “혼인 중인”을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가) 청년: 입주자 본인

별표 6의4 제3호바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입주자 자격, 선정절차 및 방법, 임대차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관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③・④ (생략)	-----.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